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준상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뼈의 상태에 대한 관점에서 종족지관절에서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나, 준종족지관절에서 발가락의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경우는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준하여 인정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발의 자연적인 상태 관점에서 볼 때이며, '발가락을 기부에서 잃은 사람'이란, 기절골의 근위부 또는 근위 1/3이내에서 잃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종족지관절이 상당부분 살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피재자의 경우 우측 제2-5족지는 모두 절단상태로 다름의 여지가 없고, 우측 제1족지에 대하여 주치의 및 공단본부 자문은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근위부 4/5이상 절단상태"라는 소견이고, 특진 소견도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근위부 1/5미만 잔존"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우측부 사전상으로 보아도 발가락의 형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 "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보아 장애등급 제8급 제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Q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족부 압제창, 우측 제1-5족지 절단창"으로 요양가로 후 치료 종결한 자가 발가락의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경우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준하여 판단한 경우

A 피재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우측 족부 압제창, 우측 제1-5족지 절단창"으로 요양가로 후 치료 종결하고 결정기관에 장애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은 피재자의 X-ray를 검토한 결과, 우측 제1족지는 근위부에서 절단되고, 우측 제2-5족지는 종족지관절 원위부 말단에서 절단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재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

해등급 제12급과 "한발의 4개발가락을 잃은 사람"인 장애등급 제10등급을 준용하여 장애등급 제9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재자는 압제상에 따른 우측 발가락 전부 절단과 성형수술로 도보시 통증이 잔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균형 감각이 상실되었으며 우측 제1족지의 장애상태는 분명히 기절골의 근위부 내지 근위 1/3이내에서 절단되어 전체 장애상태는 "한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인 제8등급 제10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에서 장애등급 제9급으로 결정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다

이에 결정기관에서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장애등급판정기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甲 소유 토지 7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저는 위 소유자 甲과 공인중개사 乙에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유자 甲은 위 토지 중 40평 정도만 장차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고 건물신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실제로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목적인 건물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경우와 같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중 약 28%에 해당하는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되어 당

초 목적인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위 토지에 대한 매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에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이상 불임 등의 질환과 남성의 발기부전, 유정 등 생식기와 비뇨기계통의 이상을 치료하고 요통을 치료하는데 많이 응용되고 있다.

또한 등 쪽에는 척추를 따라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흐르고 있고, 이 방광경에는 내장기관을 조정하는 혈자리들이 있는데 이를 배수혈이라고 한다. 이 배수혈들은 장부의 허실에 따라 손으로 눌러 진단했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중에서 신장과 관계되는 신수혈은 제2,3 요추간 주위에 위치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신장의 기능은 단순한 배설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호르몬의 분비와 비뇨생식계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므로 한방에서 허리와 골반 부위는 비뇨생식계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음호에 계속> *의정부수한방병원(031-820-7200)www.ljhrbng.co.kr

척추이상과성기능 장애 ②

척추는 목뼈인 경추와 등뼈인 흉추, 허리뼈인 요추와 그 아래 천추와 미골로 크게 나뉜다. 척추에는 각종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성기능을 주관하는 주요 신경은 생식기 쪽으로 분포되는 음부 대퇴신경, 외음부의 피부와 생식기로 분포되는 음부 신경, 골반과 생식기로 분포되는 발기 신경 등이다. 이렇게 성 기능과 관련이 있는 신경은 척추, 그 중에서도 대

부분이 허리뼈인 요추와 천추에서 나온다.

특히 발기신경과 음부신경이 나오는 천추부분은 성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천추는 환골 혹은 선골 이라고도 불리는데, 관골(중동이뼈)과 함께 골반을 이 뼈로 골반의 후면부에서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추와 흉추, 요추의 기반이 되며, 말하자면 주춧돌 역할을 한다. 이 천추 부분에는 팔요라고 하는 여덟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이 혈자리는 주로 여성의 생리불순과 방광 대장의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올 구월에 시골에 가면 어른들께서 아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임신이 기대 되면서 두렵기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이 비림이 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을 생각한다면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배우고 주의 사항을 지켜 튼튼한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적

인 진찰도 받으면서 임신의 경험이 있는 선배나 어른들의 도움받도 필요하구요.

남자 또한 아내의 임신을 앞두고 술과 담배 등 약물은 삼가고 이해와 협조를 임신한 아내의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여자 가 임신을 하게 되면 성욕보다 모성 본능이 강해지므로 자연히 성관계가 소극적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느낌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별로 달라짐을 못느

낓니다. 임신초기 별로 달라지지 않는 몸매로 더욱 임신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성관계를 하려고 하기에 아내들이 더 힘들어 합니다. 혹여 남편이 성적 불만을 갖거나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 바람을 핀다는 말이 여기서 생겼고 실제로 간혹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의도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의 걱정만큼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성충동이 생기자라도 아이 생각을 하면서 자제하거나 자위행위로 욕구를 해소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에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내도 때론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문: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흉부외과 과장 **김준성**



답답함, 화끈히 달아오르는 등의 느낌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환자는 기운이 빠져 피로감을 느끼거나 숨이 차며 속이 메스꺼운 증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수심 초에서 30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대개는 2~3분 정도 이어지다가 사라집니다. 통증은 대개 흉골의 바로 안쪽에서 느껴지며, 때로는 이러한 통증이 목, 턱, 왼쪽 어깨, 왼쪽 팔 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운동이나 감정적인 흥분은 심장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수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근의 산소요구량도 늘어나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홍색이 없이 곧바로 심근경색증(심장발작)이나 심장마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응급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포천병원 (031-539-9114)

관상동맥질환과 협심증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상동맥질환이란, 동맥경화증이 심해져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심근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지칭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 다른 지방성분, 칼슘, 기타 혈중 성분 등이 한데 엉겨서 관상동맥의 내면에 축적되면 혈관 벽은 두꺼워지고 그 내경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혈전이 생성되어 갑자기 동맥이 막힐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처음에는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대부분 서서히 진행됩니다.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흔히 협심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흉부의 통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무산소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협심증에서 보이는 통증의 양상은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예리한 통증보다는 심하게 조이는 듯한 느낌, 빠르함, 무거운 것으로 불리는 압박감, 터질듯한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저는 금년 2월에 법인격락으로 다세대주택을 1채 취득하였다가 그해 6월에 양도하였으며, 기 보유 아파트 1채를 그해 3월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번 부동산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대부분 일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부가

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외 일시적, 우발적인 거래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업자의 일반 상거래와는 달리 각 개인별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아 사업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부동

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업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규 및 판례에서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세법 규정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세법규정의 1과세기간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한 과세기간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되며, 과거의 거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HD, PE, PP 원단생산
쇼핑백·비닐인쇄기공
각종 공업용 포장자재 전문

대일비닐총판

이전개업



취급 품목
비닐, 락카, 이형제, 실리콘, 면장갑, 반코팅 장갑,
완전코팅 장갑, 고무장갑, PVC장갑, 램, 장화, 물장화,
보류, 작업복, 보호 테이프, 각종 테이프, 각종 끈, 수동밴드,
자동밴드, 마대, 마스크 등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82-12
☎ 031) 544-3627 FAX. 031) 544-3637
HP. 011-9070-3627
대표 : 김영재

